

(신)정 관

오레스트 주식회사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오레스트 주식회사 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
1. LED조명기기 제조업
1. 사무용 및 기타의자 제조업
1. 의료기기 도,소매업
1. 각 호와 관련된 무역업
1. 전동의자체험 서비스업
1. 안마의자 제조업
1. 안마의자 도소매업
1. 부동산 임대업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3조(본점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점은 평택시 내에 둔다.

②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및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rest.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인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본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한다.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이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의 종류를 정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하는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⑦ 우선주식은 회사가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⑧ 우선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의 1(전환주식)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①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전환주식의 주주가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 ②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 ③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서면으로 청구 및 주권을 제출할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④ 전환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의 2(상환주식)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자금)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①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상환하는 주식의 수는 주주가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 ⑥ 상환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의 1(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의 1(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본 조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4조(주권의 재발행)

-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① 주주와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직전년도 자기자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직전년도 자기자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소집)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권 있는 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② 대표권 있는 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직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때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

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때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권 있는 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임원과 이사회

제33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다수로 선임한다.
- ② 본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제37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의무” 규정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본 회사에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업무 및 회사 재산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수행한다.

제40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42조(업무집행)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회)

-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이 경우 정관상의 이사회는

모두 주주총회로 본다.

제44조(이사회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이사회회의사록)

-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6조(보수와 퇴직금)

-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장 계산

제47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

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는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부터 5년간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임원상여금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0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과 주식, 기타 현물 (보험 또는 유가증권)로 하며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1조(중간배당) 본 회사는 상법 제462조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

또는 현물로 한다.

제52조(배당금지청구권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기 타

제53조(내부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55조(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부 칙 (2018년 00월 00일 개정)

이 정관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위 정관은 현재 본 회사가 사용중인 정관임을 확인합니다.

오레스트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22번길 125(세교동)

대표이사 유 기 덕